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춘석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7325
----------	-------

발의연월일 : 2026. 3. 9.

발 의 자 : 이춘석 · 윤준병 · 박민규
문진석 · 임미애 · 임호선
이연희 · 한민수 · 김준혁
위성곤 · 권철승 의원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다문화가족의 청소년 등이주배경청소년의 사회적응 및 학습능력 향상을 위한 상담·교육 등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 시행하도록 하고, 성평등가족부장관으로 하여금 이주배경청소년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도록 있음.

그런데 이주배경청소년에는 다문화가족뿐만 아니라 외국에서 혼자 국내로 유학을 오거나 외국인인 부모와 함께 국내에 거주하는 재한외국인 청소년, 북한배경청소년 등도 포함될 수 있는데, 현행법에 따르면 다문화가족의 청소년만 이주배경청소년에 해당하는 것으로 오해될 소지가 있음.

이에 이주배경청소년에 재한외국인 청소년 및 북한배경청소년 등이 포함됨을 명시하고, 위기청소년 실태조사 시 이주배경청소년에 대한

실태조사도 포함하여 실시하도록 함으로써 이주배경청소년에 대한 청소년복지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려는 것임(안 제2조의2제1항 및 제18조).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2의 제목 “(실태조사)”를 “(실태조사 및 공표)”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실태조사”를 “실태조사(제18조에 따른 이주배경청소년에 대한 실태조사를 포함한다)”로 한다.

제18조제2호를 제5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호부터 제4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재한외국인인 청소년으로서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청소년
3.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북한이탈주민(이하 “북한이탈주민”이라 한다)인 청소년
4. 북한이탈주민인 부 또는 모에 의하여 북한(군사분계선 이북지역을 말한다) 외의 장소에서 출생한 청소년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실태조사 및 공표에 관한 적용례) 제2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실시하는 실태조사부터 적용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의2(<u>실태조사</u>) ①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위기청소년의 위기 원인 및 실태를 파악하는 등 청소년복지 향상을 위한 정책 수립에 필요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3년마다 위기청소년에 대한 <u>실태조사</u> 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제2조의2(<u>실태조사 및 공표</u>) ① ----- ----- ----- ----- ----- ----- <u>실태조사(제18조에 따른 이주배경청소년에 대한 실태조사를 포함한다)</u> ----- --.
② · ③ (생략)	② · ③ (현행과 같음)
제18조(이주배경청소년에 대한 지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청소년의 사회 적응 및 학습능력 향상을 위하여 상담 및 교육 등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제18조(이주배경청소년에 대한 지원) ----- ----- ----- ----- ----- -----.
1. (생략)	1. (현행과 같음)
<u><신 설></u>	2. 「 <u>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u> 」 <u>제2조제1호에 따른 재한외국인인 청소년으로서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청소년</u>

<u><신 설></u>	<u>3.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이하 “북한이탈주민”이라 한다)인 청소년</u>
<u><신 설></u>	<u>4. 북한이탈주민인 부 또는 모에 의하여 북한(군사분계선이북지역을 말한다) 외의 장소에서 출생한 청소년</u>
<u>2. (생 략)</u>	<u>5. (현행 제2호와 같음)</u>